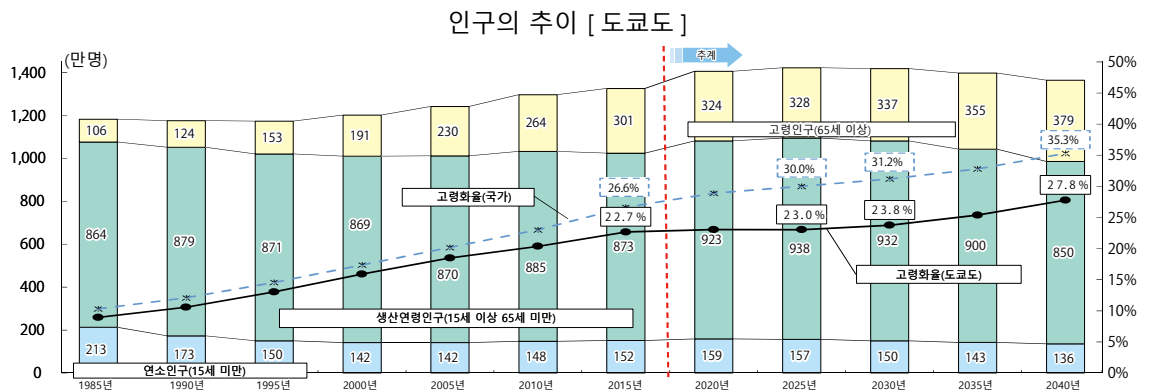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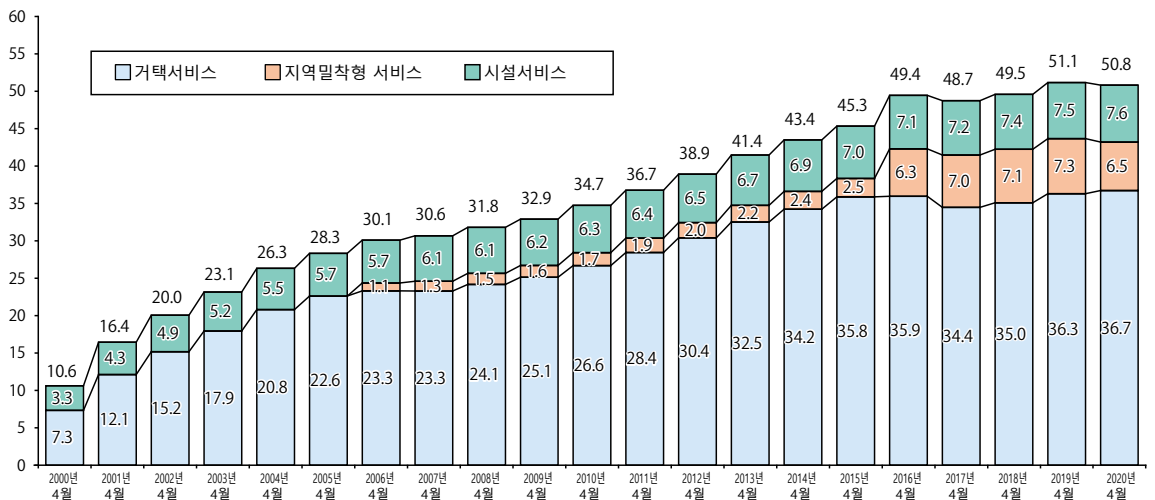
개호보험제도의 개요

- 도쿄도의 고령자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향후 4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개호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,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 그 후, 재택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착해 왔습니다.
- 개호보험제도는 나이가 들에 따라 발생하는 질환 등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상태일지라도, 존엄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,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.
- 제도의 운용 주체(보험자)는 주민에게 가까운 구시정촌입니다. 국가·도쿄도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(주) 1만명 미만은 반올림하므로, 총수 및 고령화율은 명세의 합계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자료: 총무성「국세조사」[1985년~2015년], 국립사회보장·인구문제연구소「일본의 장래 추계인구」(2017년 4월) [2020년~2040년의 고령화율(국가)], 도쿄도 총무국에 의한 추계(2020년~2040년)

개호서비스별 수급자(이용자) 수의 추이(월평균) [도쿄도]



(주 1) 2016년 4월에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수급자(이용자) 수가 급증한 것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정원 19명 미만의 통소개호가 지역밀착형 통소개호로 전환한 데 따른 것입니다.
 (주 2) 거택개호서비스에는 거택개호예방서비스, 지역밀착형 개호서비스에는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가 포함됨.
 (주 3) 제 2호 피보험자를 포함.
 자료: 후생노동성「개호보험사업상황보고(월보)」